



예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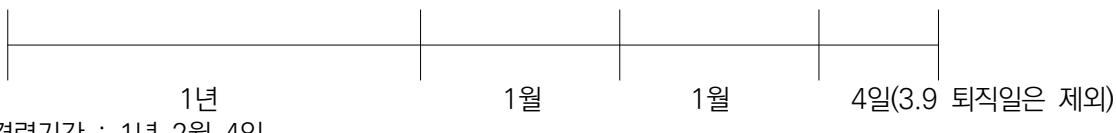
〈 인정대상 경력기간 계산 사례 1 〉

임용('22.1.5.)

'23.1.4까지

2.4까지

3.4까지 퇴직('23.3.9)



경력기간 : 1년 2월 4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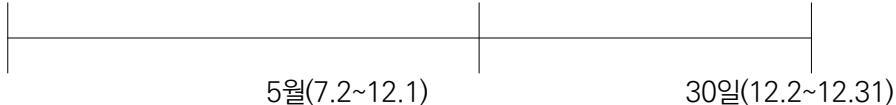
- ※ '23. 2. 5일부터 '23. 3. 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
※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(예 : 2.5 ~ 3.4),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
(예 : 1.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.30이어야 하나,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.31 ~ 2.28까지를 1월로 계산함)

〈 인정대상 경력기간 계산 사례 2 〉

임용 7월 2일

12월 1일

12월 31일까지



-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1월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30일 기준에서 1일을 뺀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
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29일임
 - ※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.
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

(2) 교육공무원 적용 예시



예시

〈 학력과 경력의 중복 〉

-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산입 (예규 [별표3] “2. [비고3] 학력과 경력의 중복” 참고)
① 2012. 2. 21. 대학졸업 ② 2012. 1. 20. OO학원 근무 시작
☞ 대학은 2월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학원은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함
(2012. 1. 20. ~ 2012. 2. 29. 기간은 학력과 경력의 중복으로 봄)



예시

〈 대학원에서 학위를 최득한 경력 〉

- 초·중·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학력은 ‘학령기감’을 통해 호봉에 반영(영 [별표 23])
☞ 예규 ‘Ⅲ-1’, ‘Ⅲ-2’에 따라,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하는 방법에 따름
 - 석사·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다닌 기간은 학령(학력)이 아닌 경력([별표 22] ‘3.유사경력 - 나. 연구경력-4’)
단, 학위취득 없이 수료만 한 경우에는 학위취득 전까지 당해 경력 인정 불가
☞ 경력기간 계산시에는 학기단위 인정방법을 따름(1학기 : 3. 1. ~ 8. 31. / 2학기 : 9. 1. ~ 2. 28(말일))